

	<h2 style="margin: 0;">간호학과운영규정</h2>	규정번호	3-4-2
		제정일자	2015.03.01.
		개정일자	2019.08.01.
		개정차수	3차
		소관부서	간호학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간호학과의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대학의 제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며 간호학과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간호학과 교수, 조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다.

###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 ①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대학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 체계에 근거하여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및 교직과정(교직이론, 교직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양 교과목은 학생이 졸업 시까지 총 25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③ 전공기초 교과목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은 8학점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전공필수 교과목과 전공선택 교과목은 총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가 되도록 편성한다.

제5조(교육과정 개선) ① 교육과정개선은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소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간호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의결된 안은 안산대학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 제3장 수업 및 성적평가

제6조(수업)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는 대학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교과목 특성에 따라 “Pass” 또는 “Non Pass”로 평가할 수 있다.

### 제4장 졸 업

제8조(졸업이수학점) 간호학과 학생의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130학점이며 이중 교양교과목 25학점 이상,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을 이수 한다.

### 제5장 보건교사 양성과정

제9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학년 승급대상자 중 교직이수를 신청한 자로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이수예정자는 1학년 2학기까지의 평균성적 100분의 90과 면접점수 100분의 10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제10조(교직과정 이수자의 이수학점) 보건교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검정 최소기준에 의해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 한다. 이외의 모든 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준한다.

## 제6장 교원의 시수

제11조(교수시간)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임상실습지도 시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

## 제7장 교원의 학생지도

제12조(학생지도)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대학 학칙시행세칙에 준하여 학생회 및 학생활동의 지도육성을 한다.

②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평생지도 교수제로 교수-학생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우며, 학습,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생지도를 시행한다.

## 제8장 행정체계

제13조(학과장, 실습과장) ① 간호학과에는 학과장과 실습과장 각 1인을 둔다.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여 학과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실습과장은 실습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과장은 학과의 인사, 예산편성 및 집행, 기타 중요 정책결정 시 간호학과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을 관계 부처장과 협의하여 학과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 제9장 위 원 회

제14조(위원회 설치)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및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내에 간호학과운영위원회,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위원회,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소위원회, 간호학과산학협력운영위원회, 간호학과학습성과평가위원회, 간호학과실습운영위원회, 간호학과발전위원회, 간호학과인사소위원회, 간호학과장학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학과 교수가 될 수 있으며, 위원은 간호학과 교수, 타학과 교수 및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① 간호학과운영위원회: 학사 운영, 학생 지도, 간호교육 품질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의결

②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위원회: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개선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의결

③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소위원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개선에 관한 제반 사항 평가·연구·제안

④ 간호학과산학협력운영위원회: 현장실습,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의결

⑤ 간호학과학습성과평가위원회: 학기별 학년별 학습성과 달성,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의결

⑥ 간호학과실습운영위원회: 교내실습, 임상실습,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⑦ 간호학과발전위원회: 학과발전을 위한 계획·운영·심의

⑧ 간호학과인사소위원회: 신임교원의 학과 인사채용 기준 검토

⑨ 간호학과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사항 심의  
제17조(회의 및 의결) 각 위원회의 지침에 준한다.

제18조(간호학과교수회의) 간호학과교수회의는 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운영전반  
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및 간호학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예 관한 사항을 논의·의결한다.

## 제10장 조 교

제19조(조교의 자격 및 배치) ① 조교는 대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한다.

② 효율적인 학과운영지원을 위해 편제정원 180명당 1명 이상의 조교를 두며, 교무행정, 학생지원, 교내실습과 현장실습 담당으로 배치한다.

제20조(조교의 업무) 조교는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